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3년 11월 17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창석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성오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11. 17.

발의의원 : 권기훈, 박우근,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이성오,  
전경원, 하병문,  
하중환 의원  
(9명)

## 1. 개정 이유

- 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나. 다중 밀집 사고의 예방,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 나.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4조)
- 다. 시행계획에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 라. 빅데이터 활용관련 사업 범위 확대(안 제17조)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빅데이터 활용 및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3.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를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빅데이터 활용)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시민 안전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2. (생 략)

제17조(빅데이터 활용) 시장은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의 인  
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  
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  
한 사업

<신 설>

2.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3.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  
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7조(빅데이터 활용) 시장은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시민 안전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시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  
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 계 법 령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